#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366

발의연월일: 2024. 7. 4.

발 의 자:위성곤·박지원·서영교

허 영・주철현・진성준

박희승 · 문대림 · 강유정

김한규 · 조인철 · 위성락

의원(12인)

## 제안이유

현행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결정은 주로 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산품과 달리 농산물은 태풍·가뭄·홍수 등 자연재해의 영향을 크게 받아 생산량 조절이 어려움. 특히 최근 기후위기로 폭우·폭염 등 극한 기후가 반복되어 농작물 작황이 좋지 않은 상황임.

여기에 더해 정부가 농산물의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해외 농산물을 수입하여 농산물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하하는 등 농산물의 시장가 격을 왜곡하면서, 과잉 생산으로 가격 폭락 시에는 농업인에 대한 생 산원가 보장 등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개별 농가 가 떠안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노동인력 부족, 기후위기와 농산물 수입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에 대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며,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농가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수급안정을 통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16조의2제1항 신설).
-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대상 품목 및 기준가격을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함(안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 다. 농산물가격안정제도 시행에 필요한 대상 품목의 선정, 기준가격의 산정, 차액의 지급비율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심의위원회를 둠(안 제16조의3제1항 신설).
- 라.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안 제16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 마.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농산물가격안정제도 시행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제1항제2호의2 신설).

#### 법률 제 호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2장에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농산물가격안정제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농가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며,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라 확정·고시된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평년 가격(직전 5년 중 최저가격과최고가격을 제외한 평균가격을 말한다), 생산비용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이하 "농산물가격안정제도"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의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채소, 과일 등 농산물가격안정제도가 필요한 대상 품목을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정·고시된 농산물가격안 정제도 대상 품목의 기준가격을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차액(기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급비율을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 제16조의3(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①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둔다.
  - 1. 대상 품목의 선정
  - 2. 대상 품목의 기준가격
  - 3. 차액의 지급비율
  - 4. 농산물의 매입ㆍ비축 및 폐기의 방법과 수량 등의 결정
  - 5. 적정 재배면적, 생산량 등의 관측 및 추계
  - 6.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의 과

반 이상이어야 한다.

- 1. 농산물 가격 및 수급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2. 품목별 생산자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3. 그 밖에 농산물가격안정제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6조의2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시행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16조의2(농산물가격안정제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
	물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농가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며,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라 확정・고시된 농
	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평년
	가격(직전 5년 중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제외한 평균가격을
	말한다), 생산비용 및 물가상승
	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u>가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u>
	관이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
	<u>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u>
	의결을 거쳐 고시한 가격을 말
	한다. 이하 같다] 미만으로 하
	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
	액을 지급하는 제도(이하 "농
	산물가격안정제도"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
	의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치는 채소, 과일 등 농산물가격 안정제도가 필요한 대상 품목을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 격안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 항에 따라 확정·고시된 농산 물가격안정제도 대상 품목의 기준가격을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 물가격안정제도의 차액(기준가 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말한 다. 이하 같다) 지급비율을 심 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제16조의3(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①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둔다.

<신 설>

- 2. 대상 품목의 기준가격
- 3. 차액의 지급비율
- 4. 농산물의 매입·비축 및 폐 기의 방법과 수량 등의 결정
- 5. 적정 재배면적, 생산량 등의관측 및 추계
- 6.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 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여 부의하는 사항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농 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 위원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 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 하는 사람이 위원의 과반 이상 이어야 한다.
- 1. 농산물 가격 및 수급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 하는 공무원
- 2. 품목별 생산자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3. 그 밖에 농산물가격안정제도

제57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융자 또는 대출 할 수 있다.

1.·2. (생략) <신 설>

3. ~ 6. (생략)

② ~ ⑤ (생 략)

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가진 사람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맞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기금의 용도) ① -----

\_\_\_\_\_

-----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제16조의2에 따른 농산물 가격안정제도의 시행

3. ~ 6.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